有效法人稅率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金 星 基*·安 淑 燦**

《目 次》

Ⅰ. 머리말
Ⅱ. 韓國企業의 租稅環境
1. 法人稅의 計算節次
2. 租稅支援制度
Ⅲ. 有效法人稅率에 관한 旣存硏究의 檢討
Ⅳ. 硏究假說의 設定
Ⅴ. 資料 및 分析方法
1. 標本企業의 選定
2. 變數의 測定
3. 實證分析模型
Ⅵ. 實證結果의 分析
1. 變數의 記述統計
2. 回歸分析結果
Ⅶ. 맺음말

Ⅰ. 머리말

租稅는 기본적으로는 국가 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해 부과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租稅減免方式을 사용하여 특정 경제활동을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등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당국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기업이나 산업, 경제활동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 관여하여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租稅의 中立性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세가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자원을 배분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주도로 경제를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조세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와 租稅政策의 기본방향이 사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이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敎授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루어지는 과도한 감면이 法人稅制의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다.(1) 이러한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다양한 租稅支援制度는 조세의 중립성 저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에 따라 조세에 대한 특례나 감면의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이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기업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기업이 부담하는 稅負擔은 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조세지원으로 인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율과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法定 法人稅率(2) 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本 硏究의 目的은 우리나라 법인세제하에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조세부담이 기업별 또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보고, 이러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이 수행하는 營業活動의 性格이나 資産構造, 資本構造의 特性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企業의 規模, 輸出比率, 資本集約度, 負債比率, 技術投資比率 등을 이용하여 有效法人稅率(effective corporate tax rate)로 측정되는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규정이 실제로 해당기업의 실질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특례규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조세환경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고, 기업간 법인세 부담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인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유효법인세율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고찰해 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의 분석을 토대로 검증대상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의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Ⅱ. 韓國企業의 租稅環境

1. 法人稅의 計算節次

기업이 납부하는 法人稅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규정의 차이에 따른 일련의 稅務調整및

---

(1) 이만우(1993),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호(12월) pp. 80-81.

(2) '94년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은 18%의 법인세율을, 1억원 초과분은 32%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산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세액 계산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각사업년도의 소득
각사업년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결정세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損益計算書上의 法人稅 差減前 純利益은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손익의 가감조정을 거쳐 各事業年度의 所得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손익의 가감조정이 필요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이 비용 수익의 인식기준으로 발생주의와 실현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반해,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등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세법에 규정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課稅標準이 결정된다.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算出稅額에서 감면세액,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게 되면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決定稅額이 계산된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法定法人稅率은 2-3년마다 약간의 조정이 있어 왔다. 비상장대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一般稅率의 경우에 1983-1988년까지는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20%,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9년부터는 20%의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을 8천만원으로 인상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4%의 세율을,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20%을 세율을 유지하였다. 한편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세원의 노출이 확대됨에 따라 1994년부터는 세율을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8%, 이를 초과하는 과표에 대해서는 32%로 인하조정하였다.

2. 租稅支援制度

특정 산업이나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租稅支援制度는 법정법인세율과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부담간에 격차를 발생시키고,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등에서 규정하는 租

稅支援(減免)制度로는 特別償却, 準備金制度, 所得控除, 稅額控除, 稅額減免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① 特別償却

고정자산의 취득초기에 내용년수 및 상각법에 따라 계산된 減價償却費보다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法人稅 納付時期를 猶豫시키는 조세지원방식으로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準備金

미래에 예상되는 費用支出이나 固定資産 取得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미리 損金으로 計上하는 것을 인정하는 間接租稅支援制度로서 특별상각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징수유예효과가 있다. 준비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단 설정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준비금은 향후 발생되는 비용이나 자산의 감소에 충당되기도 하고,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환입됨으로써 익금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③ 所得控除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課稅標準을 산정할 때 일정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효과는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법인의 한계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稅額控除

기업이 납부할 算出稅額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인 세금혜택이 기업에 주어지며,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稅額減免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득에 대하여 稅金을 완전히 免除해 주거나 또는 일정비율만큼 輕減해 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로서 조세감면규제법과 외자도입법에 규정되어 있다. 세액감면의 효과는 감면의 대상이 된 소득금액에다 납세법인의 유효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위에서 살펴본 조세지원제도 이외에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特定收益의 益金不算入, 非課稅所得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적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

(3) 이만우(1994), 「세법 —세무회계측면을 중심으로—」, 박영사.

이상의 다양한 조세지원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조세당국이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中小企業支援
2. 外貨獲得事業支援
3. 技術 및 人力開發支援
4. 投資誘引提供

1.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조직, 기술력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세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198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으로는 준비금을 증액설정 하거나 특별상각을 일반기업에 비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히 중소기업에 한해서 세액감면 등을 규정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관련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준비금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세액감면 : 사업전환중소기업(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2. 外貨獲得事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조건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해야 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인 輸出 擴大 政策을 추진하여야 했고 조세정책도 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1970년대까지 크게 확대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와서는 감면범위가 많이 축소 조정되었다.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상각, 준비금설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상각: 제조업, 광업 및 수산업의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 18조)

준 비 금: 수출손실준비금(조세감면규제법 제 16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세감면규제법 제 17조)

해외사업손실준비금(조세감면규제법 제 19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세감면규제법 제 23조)

소득공제: 해외사업소득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 20조)

3.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租稅支援制度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의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이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해 준비금 설정시 손금인정,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특별상각: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조)

준 비 금: 기술개발준비금(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소득공제: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소득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세액공제: 신기술사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 10조)

기술개발연구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 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세액감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특허권 등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4. 稅制上의 投資誘引制度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특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및 장치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설비투자를 촉진, 유인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일시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투자에 소요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완료되어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년도의 법인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줌으로써 투자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4)

---

(4) 일반적으로 조세자체는 기업투자의 순수익률을 저하시키는 경제적 효과로 인해 투자에 역효과를 주는 면이 있다.

특별상각: 광업, 제조업 또는 전기, 가스업에 대한 특별상각(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건설업의 특별상각(제51조)

에너지 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산업폐기물시설 등에 대한 특별상각(제51조)

준비금제도

투자세액공제: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소득공제 : 증자소득공제(조세감면규제법)

Ⅲ. 有效法人稅率에 관한 旣存硏究의 檢討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정도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 범주의 연구는 기업의 實質的인 租稅負擔이 기업간에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고, 두번째 범주의 연구는 유효법인세율을 政治的 費用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요소로 보아 이를 기업의 회계방법선택에 대한 '政治的 費用 假說' (political cost hypothesis)의 검증에서 하나의 독립변수로 이용하는 연구이다.

有效法人稅率로 측정되는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기업별로 또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연구로는 Siegfried [1974] 와 Stickney and McGee [1982] 의 연구가 있다. Siegfried [1974] 는 1963년도에 110개 소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이 산업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산업지수를 이용한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효법인세율이 산업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투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본이득 그리고 비율감모상각(percentage depletion)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Siegfried[1974]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갖는 산업의 유효법인세율보다 낮다는 것을 보였다.

産業指數를 이용한 Siegfried [1974] 의 연구와는 달리 Stickney and McGee [1982] 는 個別企業의 財務諸表資料를 이용한 群集分析(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중립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는 1978년 및 1980년 2개년에 걸쳐 25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차이가 ① 企業規模 ② 資本集約度 ③ 海外營業活動의 크기 ④ 天然資源의 探査, 抽出 및 開發事業活動의 크기 ⑤ 負債依存度 등의 변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Stickney and McGee [1982]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자본집약도가 높으며, 천연자원의 탐사, 추출 및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낮은 유효법인세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나 해외영업활동의 크기 등의 변수는 기업간의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유의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았다. 위의 두 연구와는 달리 Zimmerman [1983] 은 유효법인세율을 정치적 비용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이를 규모변수의 政治的 費用에 대한 代理性與否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는 연구를 하였다. 1947~82년까지의 35년간의 기간에 걸쳐 기업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를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Zimmerman [1983] 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50대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다른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이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러한 관계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석유 및 가스업의 경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有效法人稅率과 기업의 規模가 유의적인 관련이 있다는 Zimmerman [1983] 의 연구결과는 대규모기업이 소규모 기업보다 보고이익을 낮추는 회계절차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정치적 비용 가설과 일치되는 결과로서 기업의 규모를 기업의 정치적 비용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이전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Zimmerman [1983] 연구모형에서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사이의 전반적인 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가 존재한다면 기업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기업규모와 정치적 성공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편의가 있을 수 있다. Wang [1991] 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純營業損失(net operating losses; NOLs)이 기업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전반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78~83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정치적 비용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에서 각각 추출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전반적인 관계에 미치는 순영업손실의 간접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Wang [1991]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인 순영업손실이라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공의 편의(biased)된 대용변수가 되며,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기업규모의 모든 영향을 이용하여 기업규모와 정치적인 성공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편의된 결론을 이끌어 내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조성표 [1990] 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規模에 따라 政治的 費用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規模假說의 가정이 타당한 지를 검증하였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총 2,632기업/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규모 상위 10%인 기업(초대규모 기업군)들이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명시적 조세인 법인세 부담(유효법인세율)에서 타기업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암묵적 조세인 준조세부담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합계인 조세총계에서는 약간 높은 부담율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1992년까지의 기간동안 매년 473-561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 및 분산분석과 DUNCAN분석을 한 권순철 권순창 [1993] 의 연구에서는 규모변수와 기업의 조세부담율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研究假說의 設定

우리나라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다양한 조세지원규정과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기존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기업별,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변수로서 規模, 輸出比率, 資本集約度, 技術投資程度, 負債比率을 선정할 수 있다.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규모변수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조세환경으로부터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기술투자정도, 부채비율을 선정하였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① 規模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들로서 중소규모 이상의 기업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법의 규정이 본 연구의 표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정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이하는 18%, 1억원 초과부터는 32%라는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법규정은 없다.

Zimmerman [1983] 의 연구에서 초대기업의 경우 유효법인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이 유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를 고용하여 절세를 도모할 수도 있고, 영업활동을 조정하여 최적의 세무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輸出比率

수출의 활성화는 그동안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는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매출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조세지원을 더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資本集約度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상각, 각종 준비금제도 및 세액공제 등은 모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집약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기업보다 이러한 혜택을 더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므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④ 技術投資程度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술개발과 관련된 활동 및 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⑤ 負債比率

현행 세법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 차입금 등 부채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처리되지만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익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채의 조달비용과 자기자본의 조달비용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기업은 더많은 부채를 이용할 유인이 있게 된다.(5) 기업은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그에 따른 이자의 손금처리 인정으로 더 낮은 유효법인세율을 보이게 될 것이다.

선정된 설명변수의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假說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가설의 요약

규 모	수출 비율	자본집약도	기술투자비율	부채 비율
(−)	(−)	(−)	(−)	(−)

(5) 신동령, "한국제조기업의 재무구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21권 제1호(11월), pp.133-134.

Ⅴ. 資料 및 分析方法

1. 標本企業의 選定

본 연구의 硏究對象期間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3개년이며, 標本企業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중에서 다음 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하였다.

① 어업, 광업, 증권 은행 보험업, 오락 문화 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기업

②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 陰인 기업

③ 유효법인세율이 0보다 적거나, 1보다 큰 기업

④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기업

표본선정기준 ①은 연구대상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였으며, 기준②와 ③은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표본기업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1989년에 549개, 1990년 543개, 1991년 537개 기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2. 變數의 測定

변수의 측정은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財務諸表資料('KIS-FAS')를 이용하였다.

① 有效法人稅率

유효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납세전 순이익 외에 영업이익 또는 매출총이익 등의 영업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한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발생주의 회계절차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Zimmerman [1983] 에서 사용한 측정치이다. 한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다면 이러한 영업현금흐름 측정치는 투자원가 (예를 들면, 감가

$$\text{㉮}\ \frac{\text{법인세}}{\text{납세전 이익}} \qquad \text{㉯}\ \frac{\text{법인세}}{\text{납세전 이익 + 감가상각비}}$$

$$\text{㉰}\ \frac{\text{법인세}}{\text{영업이익}} \qquad \text{㉱}\ \frac{\text{법인세}}{\text{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text{㉲}\ \frac{\text{법인세}}{\text{매출총이익}} \qquad \text{㉳}\ \frac{\text{법인세}}{\text{매출총이익 + 감가상각비}}$$

상각비)의 현금흐름 원가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왜곡하게 된다. 따라서, ㉮ ~ ㉰ 같은 대체적인 측정치를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하였다.(6)

또한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법인세를 이용하지 않고 익년도의 이익잉여금계산서의 추가납부세액 및 환급액을 고려하였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7)

② 規模: 총자산 또는 매출액의 자연로그

③ 輸出比率: 수출/매출

④ 資本集約度: 〔유형고정자산(순액)-건설가계정〕/총자산

⑤ 負債比率: 장기부채/총자산

⑥ 技術投資比率: (연구개발비 + 기술개발비)/매출

3. 實證分析模型

본 연구의 실증분석모형으로는 각 설명변수들이 기업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重回歸分析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유효법인세율}_i = a_i + b_1X_{1i} + b_2X_{2i} + b_3X_{3i} + b_4X_{4i} + b_5X_{5i}$$

단, X_{1i} : 기업의 규모

X_{2i} : 수출비율

X_{3i} : 자본집약도

X_{4i} : 부채비율

X_{5i} : 기술투자비율

산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더미(dummy) 變數를 포함한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의 기간간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89-91년의 3개년에 걸쳐 실증분석을 하였다.

---

(6) Zimmerman, J.L.(1983),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August), p. 120.

(7)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한 법인세액과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액의 차이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법인세의 50%이상이 되는 기업도 있었는 데, 그 비율은 1989년에 2%, 1990년도에 5%, 1991년도에 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Ⅵ. 實證結果의 分析

1. 變數의 記述統計

1989-91년까지의 표본기업의 有效法人稅率 平均이 제시되어 있는 〈표 2〉를 보면 세전순이익 기준 유효법인세율의 평균은 33%-36%, (세전순이익 + 감가상각비) 기준 유효법인세율의 평균은 17%-20%수준으로서, 평균적인 기업의 조세부담이 시간경과에 대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1991년부터 법정법인세율이 상향(30%-34%)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법인세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法定法人稅率과 유효법인세율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기업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표본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의 기술통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기업이 속하는 産業을 9개로 구분하여[8] 각 산업집단의 유효법인세율을 살펴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산업별 유효법인세율의 평균은 (세전순이익+감가

〈표 2〉 유효법인세율의 기술통계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법인세/세전순이익		법인세/(세전순이익 + 감가상각비)	
1989년	0.35	0.16	0.20	0.12
1990년	0.36	0.15	0.19	0.13
1991년	0.33	0.17	0.17	0.13
	법인세/영업이익		법인세/(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1989년	0.22	0.30	0.14	0.35
1990년	0.28	1.32	0.17	0.45
1991년	0.27	1.81	0.13	0.41
	법인세/매출총이익		법인세/(매출총이익 + 감가상각비)	
1989년	0.10	0.11	0.08	0.07
1990년	0.09	0.12	0.08	0.12
1991년	0.08	0.08	0.06	0.06

상각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앞으로 제시되는 실증결과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유효법인세율은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산업6(기계산업), 산업7(전기 전자산업), 산업5(제1차금속산업), 산업1(음식료품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 비해 산업9(도소매 서비스업), 산업8(건설업), 산업3(화학산업), 산업4(비금속광물제품)의 유효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2(섬유 의복산업)는 중간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유효법인세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중회귀분석에서 산업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본기업 전체 및 산업별로 규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기술투자비율의 평균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술투자비율이 매출액의 0.37%로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는, 수출비율과 기술투자비율이 산업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산업에 따라 2%에서 4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투자비율의 경우에도 0.06%에서 1.14%로 산

〈표 3〉 산업별 유효법인세율의 평균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8	산업9
1989년	0.16	0.20	0.26	0.25	0.15	0.17	0.13	0.26	0.24
1990년	0.18	0.17	0.24	0.20	0.15	0.15	0.12	0.25	0.25
1991년	0.16	0.17	0.21	0.19	0.15	0.13	0.12	0.23	0.22

(8) 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산업1: 음식료품 제조업(42)
산업2: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68)
산업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03)
산업4: 비금속광물제품(24)
산업5: 제 1차 금속산업(31)
산업6: 조립금속 기계 장비제조업,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4)
산업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77)
산업8: 건설업(34)
산업9: 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도소매업, 숙박, 운송 통신업(65)

( )안의 수치는 각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수임

〈표 4〉 산업별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전체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8	산업9
규 모	17.93	18.39	17.85	17.64	17.84	18.45	17.70	17.56	18.50	18.45
수출비율	19.61	2.16	40.77	10.61	2.79	18.00	17.55	34.99	6.72	23.78
자본집약도	29.98	37.30	31.69	30.00	37.79	33.19	29.03	32.01	11.55	25.15
부채비율	22.62	22.97	25.09	24.56	26.94	20.73	19.53	19.46	25.41	20.14
기술투자비율	0.37	0.17	0.07	0.39	0.20	0.06	0.62	1.14	0.16	0.08

* 1989년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표 5〉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

	규 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기술투자비율
규 모	1.00				
수출비율	0.00	1.00			
자본집약도	0.05	0.05	1.00		
부채비율	0.11*	−0.09	0.09	1.00	
기술투자비율	0.06	−0.05	0.03	0.01	1.00

* $p<0.01$
1989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음.

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계변수를 이용한 중회귀분석과정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독립변수들간의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문제이다. 다중공선성이란 2개 혹은 그 이상의 독립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말한다. 독립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있으면 회귀계수의 추정량의 분산이 급격히 확대되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解를 구하는 문제도 불안정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규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기술투자비율 등의 설명변수간의 相關關係를 분석해 보았다. 1989년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데, 부채비율과 규모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9) 1990년 및 1991년도의 자료에서도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될 정도의 설명변수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9) 일반적으로 두변수의 상관계수가 0.7-0.8이상 일 때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回歸分析結果

기업간 또는 산업간에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기업이 수행하는 영업활동의 성격이나 자산구조, 자본구조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重回歸分析을 하였다. 규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기술투자비율을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규모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동일한 방향으로 유효법인세율의 기업간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輸出比率, 資本集約度, 負債比率, 技術投資比率이 높을수록 기업의 상대적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자본집약도는 여타 변수들보다 유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規模는 기업의 실질적 조세부담과는 유의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권순철 권순창 [1993]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결과는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는 세법상의 다양한 특례규정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설명변수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는 1989-91년의 3개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비율의 경우에는 1991년도 분석에서 유의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의 설명력은 0.16-0.18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에서 보면 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産業要因을 고려하는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분석에서 얻는 시사점도 클 것이다. 산업더미(dummy)를 고려하여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模型의 說明力은

〈표 6〉 중회귀분석 결과

	1989년	1990년	1991년
규 모	−0.0056(−0.137)	0.0106(0.256)	-0.0095(−0.229)
수 출 비 율	−0.1784(−4.384)**	−0.1042(−2.526)*	−0.0360(0.863)
자 본 집 약 도	−0.3141(−7.718)**	−0.3435(−8.334)**	−0.3246(−7.732)**
부 채 비 율	−0.1108(−2.702)**	−0.1248(−3.020)**	−0.1469(−3.536)**
기술투자비율	−0.1646(−4.058)**	−0.1311(−3.186)**	−0.1526(−3.694)**
$R^2(\bar{R}^2)$	0.18(0.17)	0.17(0.16)	0.16(0.16)

*: $p<0.05$ —
**: $p<0.01$ —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한 의미임.

〈표 7〉 산업더미를 고려한 경우의 중회귀분석

	1989년	1990년	1991년
규 모	−0.0088(−0.220)	−0.0167(−0.401)	−0.0593(−1.394)
수 출 비 율	−0.1385(−3.304)**	−0.0492(−1.160)	−0.0061(−0.141)
자 본 집 약 도	−0.2854(−6.820)**	−0.3165(−7.198)**	−0.3060(−6.738)**
부 채 비 율	−0.1361(−3.534)**	−0.1414(−3.566)**	−0.1607(−4.002)**
기술투자비율	−0.1100(−2.648)**	−0.0513(−1.191)	−0.0666(−1.518)
산업 1	−0.0119(−0.236)	0.0140(0.270)	0.0177(0.322)
산업 2	0.1015(1.734)	0.0124(0.208)	−0.0050(−0.082)
산업 3	0.3005(4.770)**	0.2064(3.160)**	0.1494(2.191)*
산업 4	0.1500(3.225)**	0.0689(1.426)	0.0826(1.629)
산업 5	−0.0373(−0.762)	−0.0434(−0.852)	0.0051(0.097)
산업 6	−0.0160(−0.277)	−0.0775(−1.305)	−0.1095(−1.765)
산업 7	−0.0485(−0.770)	−0.1357(−2.109)*	−0.0973(−1.476)
산업 8	0.0731(1.380)	0.0595(1.064)	0.0613(1.040)
산업 9	0.1862(3.283)**	0.1366(2.358)*	0.1741(2.897)**
$R^2(\bar{R}^2)$	0.30(0.28)	0.26(0.24)	0.24(0.22)

*: $p<0.05$ —
**: $p<0.01$ —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한 의미임.

0.22-0.30 수준으로 산업더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설명력이 0.08-0.12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조세지원이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와 관련된 실증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3(화학산업)과 산업9(도소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과 正의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설명변수의 기술통계가 제시되어 있는 〈표 4〉를 보면 산업3 및 산업9의 자본집약도 및 부채비율이 타 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요인을 고려한 결과 기술투자비율과 수출비율의 유의성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두 변수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표 3〉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앞의 실증분석결과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租稅支援制度가 각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세제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중심 기업이나, 기술집약적 및 자본집약적

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부채의존도가 높은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세제의 과도한 조세감면정책이 租稅의 中立性과 衡平性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Ⅶ. 맺음말

본 연구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3개년동안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租稅負擔(有效法人稅率)이 기업간 또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특성 및 자본구조와 생산구조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검토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기업의 規模, 資本集約度, 輸出比率, 負債比率, 技術投資比率 등의 설명변수를 선정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기술투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는 유효법인세율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요인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양한 租稅支援制度의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존재함으로 인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조세부담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조세감면방식은 租稅의 衡平性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제지원의 비용 측면만을 고려한 분석으로서 조세 지원의 惠澤(benefit)을 구성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목표했던 정책의 유인책으로서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본연구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비상장기업을 연구대상기업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증권시장에의 상장여부 등의 기업특성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 조세부담이 기업의 합리적인 법인세 최소화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의 비합리적인 개입에 의해 불가피하게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의사결정에서 조세감면의 모든 효과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參 考 文 獻

곽수근 · 김평기(1992). "외부감사의 고용유인에 관한 연구-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세무정보유인의 추가적 검토-." 「경영논집」,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pp.263-302.

권순철 · 권순창(1993).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검토." 「세무학연구」 제 5호(12월), pp.73-94.

신동령(1991). "한국제조기업의 재무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21권 제1호(11월), pp.133-134.

이만우(1991). "법인세법상 각종 세제혜택의 재무적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21권 1호(11월), pp.271-294.

이만우(1993).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호(12월), pp.73-87.

이만우(1994). 「세법 -세무회계측면을 중심으로-」, 박영사.

이준규(1992). "법인세제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법인세 부담율의 측정에 의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한국신용평가(주). 재무제표자료(KIS-FAS).

Bernard, V.L., "A Comment O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summer), 1984, pp.75-78.

Stickney, C.P., and V.E. MeGe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 (winter), 1982, pp.125-152.

Tax Notes,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in 1980," Tax Note 14(March), 1982, pp.889-944.

Wang, S.W.,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s: A Test of Firms' Political Success,", *The Accounting Review*(January), 1981, pp.158-169.

Zimmerman, J.L.,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August), 1983, pp.119-149.